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97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이상식 · 권철승 · 부승찬
박정현 · 채현일 · 양부남
복기왕 · 이해식 · 임호선
문대림 · 박민규 · 이재관
정춘생 · 이정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

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경찰수사

제32조의2(수사심의위원회) ① 경찰 수사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안건 범위는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도경찰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법제도 및 경찰수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도경찰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사건관계인(피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 ⑦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 ⑨ 국가수사본부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은 각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심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6장의2 경찰수사</u> <u>제32조의2(수사심의위원회) ① 경</u> <u>찰 수사의 공정성 · 적정성을</u> <u>확보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논</u> <u>의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u> <u>및 각 시 · 도경찰청에 수사심</u> <u>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가</u> <u>수사본부와 시 · 도경찰청 위원</u> <u>회의 심의안건 범위는 성격에</u> <u>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국가수사본부에 두는 수사</u> <u>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u> <u>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u> <u>시 · 도경찰청에 두는 수사심의</u> <u>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u> <u>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u> <u>사법제도 및 경찰수사 등에 관</u> <u>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u> <u>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수</u> <u>사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u> <u>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거</u> <u>쳐 경찰청장이, 각 시 · 도경찰</u>

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건관계인(피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⑦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국가수사본부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은 각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심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